

의안번호	제 33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8월 28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착·월·의월·대표·박의)

의
번
호
33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사무 기간 만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및 재위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위탁”의 정의 (안 제2조제5항)
 -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동의 및 보고 (안 제5조)
 - 기준의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규정 신설 (안 제10조)
 -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법적, 합목적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안 제11조)
 -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도지사가 성과평가 실시(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없음
- 라. 입법예고 : 2018. 8. 1 ~ 8. 20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국가사무의 위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 근로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신청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 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의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받은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실어야 한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자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중·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탁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2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등 징수·관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처리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소·정지·시정 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따로 평가를 받는 사무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사무 중 위탁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5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

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표]

위탁사무명 (제4조제4항 관련)

소 관	위 탁 사 무 명	위 탁 대상기관	근거법규
공보관	·인터넷방송 운영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방자치법 제104조
투자 유치과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 (다만,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임대사무를 포함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일자리 기업과	·기능경기대회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문화 예술 산업과	·충청북도 공예품경진대회 및 공예 아카데미 운영	도내 공예단체·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제20조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